**사인이 제기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공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텍사스주법상 구체적 과실의 입증 없이도 추정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SNEAD v. REDLAND AGGREGATES LTD.

21 Med. L. Rptr. 1865(제 5 연방고등법원)

**사건개요**

1. 원고 Edwin de Steiguer Snead 는 원고 Georgetown Railroad Co. (이하 Georgetown 이라 한다)의 회장이다. 1984 년에 Snead 그의 동생 Bill 은 덤프화차(dump train)라는 명칭의 새로운 형태의 화차를 도안, 개발하였는데 이는 수개의 무개·개저식 화차를 연결하여 이동화차(transfer car)에 연결시키는 방식이었다. 각 화차 밑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이동화차 밑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화차에는 아래쪽에 출구가 있어서 원자재를 쉽게 컨베이어 벨트로 부릴 수 있으며 벨트를 따라 이동화차로 운반한 다음 다시 트랙으로 부리도록 되어 있었다. 위 덤프화차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의 화차에 비해 유리한 점은 추가장치나 특별설비 없이 원자재 등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Snead 는 1985 년에 위 덤프화차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에서는 10 년 전에 접수된 한 독일의 특허신청이 유사한 장치를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Snead 의 특허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Snead 는 위 장치의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특허를 출원해서 획득하였는데, 이는 위 덤프화차의 일반적인 구조(general concept)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2. Snead 는 1985 년에 위 덤프화차를 완성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선전하기 시작했다. Georgetown 도 위 덤프화차를 텍사스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Snead 는 1986 년 테네시주 차타누가에서 위 덤프화차의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직후 영국에서 모래, 자갈 등의 채석장업에 종사하는 피고 Redland Aggregates Ltd. (이하 Redland 라 한다)가 Snead 에 접근해서 유럽에서의 덤프화차 사용에 관심을 표시하였다.

3. 1986.11. Snead 는 영국에서 Redland 와 Redland 의 화차공급자인 피고 Standard Railway Wagon Co. Ltd. (이하 Standard 라 한다) 의 대리인을 만나 덤프화차를 설명하고, 특허출원 중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소책자, 비디오테이프, 사진 등을 제공했다. 쌍방은 특허료문제를 논의하고 그 후 텍사스에서 만나 직접 화차를 살펴보기로 합의하여 1986. 11. 14. Georgetown 의 공장에서 회동했다.

4. 같은 해 11. 26. 이 사건 당사자들은 Georgetown 의 공장에서 다시 만나 원고측은 덤프화차의 사용을 시범 보이고, 또한 위 화차의 기술적 장점과 화차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날 밤 Snead 는 피고회사들의 대리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측은 Snead 에게 덤프화차의 특허권 문제를 문의했으나, Snead 는「특허권은 존재하는데, 이는 자신의 고유자산이고 이를 논의 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날 Snead 는 피고들에게 덤프화차에 관한 특허계약을 제안했으나[Snead 는 전에

영업비밀(confidentiality)에 관해 언급한 바는 없다]. 피고들 대리인은 영국에서부터의 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특허권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특허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대답 했다. 이에 Snead 는 다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제시했으나, 피고들 대리인이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결국 Snead 는 새로운 비밀유지계약을 수정제안하자 피고들 대리인도 이에 서명하기로 동의 하였다. 위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에 의하면 George-town 은 Redland 와 Standard 에게 영국에서 덤프화차의 실용가능성을 연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대신 Redland 와 Standard 도 George-town 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그 연구와 관련하여 얻는 모든 정보를 Georgetown 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5. Standard 는 British Rail 과 영국에서의 덤프화차 실용성에 관해서 논의했으나, British Rail 이 그러한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들은 British Rail 에 적합한 화차를 연구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Snead 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특허계약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Standard 는 자신의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에,

Georgetown 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화차를 개발하고, Georgetown 의 도면과 자료는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Standard 는 Georgetown 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방식을 통보한 후 이를 제작 완료하여 시판하였다.

6. 1988. 2. 1.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breach of a confidential relationship)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5. Snead 는 위 소송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고들이 「국제절도 J, 「산업스파이」 및 「국제적 해적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7. 1 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비배심재판(bench trial)을 거쳐 본소·반소 전부 피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들은 위 덤프화차에 관한 영업비밀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비밀유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다. 즉, Snead 는 덤프화차의 일반적인 구조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Snead 가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은 사위에 의한 것이어서 비밀유지계약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의 반소에서는, 법원은 원고들을 법률상 당연히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하고, Snead 는 위 보도자료를 발표함에 있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원은 Snead 등은 Redland 와 Standard 에게 각 1 달러씩의 보상적 손해배상, 각 50 만 달러씩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8. Snead 와 Georgetown 은 반소인 명예훼손소송에 관해 재 심의를 신청했으나, 연방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다

**판결요지**

1. 법인이 공공적 인물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관계지역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에 대한 법인의 지명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그리고 법인이 받는 언론조명의 빈도와 강약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영국회사가 미국 내에 자회사도 없고, 그 영업내용이 광산업과 열차제조업 등이어서 대다수의 미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소비재 제조 회사 상인처럼 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언론의 관심을 끈 사실이 입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회사는 사인(비공공적 인물· private figure) 이라 할 것이다.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닌 문제에 관하여 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헌법은 최소한의 과실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텍사스주법 하에서 사인인 원고가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였다고 비방하는 언론보도문을 발표하고 그 자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과실의 입증 없이도 추정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위 언론보도문은 사인간의 민사소송에 관한 자발적인 언급(unsolicited comment)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연방법원이 1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얻은 명예훼손소송의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텍사스주법상 현실적 손해배상(actual damages)을 얻지 못한 원고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원고가 얻은 1 달러의 금액은 현실적이 아닌 명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추정손해는 현실적 손해의 대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정손해가 허용된다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판결이유(요약)**

1. Snead 는 이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당 법원은 우선 피고들이 공공적 인물(public figures)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과 이 사건 원고들의 언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명예훼손소송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그 명예훼손발언의 내용이 최소한 헌법상 요구되는 과실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결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우선, 우리는 Redland 와 Standard 가 공공적 인물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323, 344-45)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공적 인물 (public figures) 과 사인 (private figures) 을 구별하는 두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첫째로, 공공적 인물은 비공공적 인물보다 의사소통경로에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그릇된 언행을 반박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공공적 인물의 권익은 보다 더 쉽게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더 큰 이익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공공적 인물은 그들 자신을 대중의 눈에 노출시켜 결국 보다 정밀한 관찰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다. 즉, 공공적 인물은 스스로 대중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위 344-45,94 S. Ct. 3009).

그러나, 공공적 인물과 비공공적 인물의 2분 법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법인 (corporation) 의 경우에는 항상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Gertz 판결의 판단기준은 법인의 경우 그대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공공적 인물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사실관계와 주변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소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들이 위 문제를 판단하는데 유일한 기준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관계지역에서의 핑균인에 대한 법인의지 명도 내지는 평판이다.
둘째,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법인이 받는 언론조명의 빈도와 강약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 법원은 Redland 와 Standard 가 비공공적 인물(private figures)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언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는 언동의 형태, 내용 및 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461 U. S. 138, 147-48; Dun & Bradstreet, 472 U.S.761).

우선 이 사건 언동의 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Snead 는 위 명예훼손적 언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a matter of public concern)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내용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발표한다는 사정 만으로 그 발언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위 보도자료의 배포는 자발적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그 언동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Snead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 보도자료는 소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②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산업스파이행위와 국제경쟁에 관한 것인데, 이는 모두 언론에서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③ 자신의 언동이 기차업계와 건설업계에는 특별한 관심사이다.

위 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Snead 는 Time, Inc. v. Firestone, 424 U. S. 448,456-67 판결을 제시하나, 오히려 위 법원에서는 「개인이 송사 (송효) 에 휘말린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보호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Snead 의 ②의 주장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제경쟁과 산업스파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Snead 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나, 그의 이 사건 언동은 국제경쟁과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진행중인 공적 토론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위 보도자료는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발언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특정업계 관련자」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이었다(Dun & Bradstreet, 472 U. S.762).

Snead 의 위 ③의 주장은 오히려 Redland 와 Standard 에게 유리한 주장이다. 만약 기록상 위 분쟁이 기차업계와 건설업계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결국 일반대중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언동이 행하여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보도자료가 사인간의 소송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배포된 것(unsolicited comment on a lawsuit)이고, 기존의 공적 관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언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위 세가지 요소(언동의 형태, 내용 및 그 상황)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언동은 사인의 이익에 관한 사항(a matter of private concern)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Snead 는 징벌적 손해를 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자신에게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었고, ② 제 1 심 법원은 현실적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③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Redland 와 Standard 는 ① 제 1 심 법원이 추정손해 (presumed damages)를 인정하여야 하였으며, ②보다 많은 액수의 현실적 손해를 인정하여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해액의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Redland 와 Standard 는 제 1 심 법원이 보다 많은 액수의 현실적 손해를 인정하여야 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제 1 심 법원의 판시원문을 그대로 보기로 하자.

「피고들이 이 사건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게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특정한 현실적 손해(any specific actual damages)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나, 법률상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 현실적 손해는 추정되며, 현실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징벌적인 의미를 가진 특별손해배상액(exemplary damages)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

제 1 심 심리 중 Snead 가 재 심리를 신청함에 있어, 현실적 손해의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징벌적 손해를 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제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했다.

「이 법원은 Snead 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상당한 현실적 손해(substantial actual damages)를 입은 사실을 증거의 우열(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입은 정확한 실제손해액(exact actual damages)은 증거 (competent evidence)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1 달러씩의 현실적 손해를 인용하였으나,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위와 같은 제 1 심 법원의 판시는 Redland 와 Standard 가 현실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Redland 와 Standard 가 계산 불가능한 현실적 손해(no quantifiable actual damages)를 입었다는 제 1 심 법원의 판시 내용은 정당한 것이며, 그들이 법률상 필요한 정도의 구체적인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s with the required specificity)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제 1 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나. Redland 와 Standard 는 제 1 심 법원이 추정손해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텍사스주법 하에서는 법률상 당연한 명예훼손의 경우 추정손해의 배상은 가능하다(Leyendecker @ Assocs. v. Wechter, 683 S.W. 2d369, 374). 명예에 관한 손해액은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추정손해를 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추정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제 1 심 법원의 인용문구에 의하면 위 법원은 위 추정손해에 관한 텍사스주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상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 손해는 추정되며, 현실적 손해의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징벌적인 의미를 가진 특별손해배상액(exemplary damages)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의 판시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추정손해부분에 대한 제 1 심 법원의 판시 내용은 다소 모호하며, 그 판시 중 명확하게 Redland 와 Standard 에게 추정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도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텍사스주법상 Snead 가 법률상 당연히 명예훼손을 범하였다 인정하더라도 추정손해를 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제 1 심 법원이 추정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대로 제 1 심 법원은 추정손해라 함은 현실적 손해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의제(a legal fiction)라고 잘못 이해한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최소한, 위 추정손해에 관한 제 1 심 법원의 입장은 상당히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분을 제 1 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추정손해에 관한 제 1 심 법원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와도 관련되어 있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과실의 헌법적 기준을 다툰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이 사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a matter of private concern)인 순수 개인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수 개인적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 1 조상 적용되어야 하는 과실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보기로 한다(이는 환송후의 제 1 심 법원의 정확한 심리를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Gertz v. Robert Welch, Inc.418 U. S. 323, 349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추정손해와 징벌적 손해를 받기 위하여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실적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주정부는 과실 없이 책임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Dun & Bradstreet 사건은 명예훼손소송의 법리에 또 하나의 이분법을 추가하였다. Dun &Bradstreet 사건 이후에는 Gertz 판결에서 정의된 사인에 관한 과실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 (speech on an issue of public concern)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 위 Dun & Bradstreet 판결에서 5 명의 대법관들은 순수 개인적사건에서 사인이 추정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현실적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해로운 언론도 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을 왜곡한 발언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not worthy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과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 1 조의 역할은 명예훼손 발언 그 자체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 발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로운 언론·출판의 자유의 향유를 위축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허위의 명예훼손 발언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이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는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헌법적 명예훼손의 법리에 관한

지난 30 년은 위 두 가지 개념을 적정하게 조화시키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Sullivan 사건 이후의 일련의 판결들이 그러하듯이 문제된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함에 주정부가 가지는 정당한 이익의 적정한 조화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Dun & Bradstree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Gertz 판결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순수 개인사건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칙으로 복귀함을 허용하는 것을 암시했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 개인사건에 관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연방헌법은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텍사스주법상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libel per se) 추정적 손해의 배상은 피고측의 과실의 입증 없이도 가능하다(Jenkins vTaylor, 4S. W. 2d 656, 661). 연방헌법 또는 텍사스주법상 순수 개인사건에 있어서 추정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어떠한 과실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환송후의 제 1 심 법원은 추정손해를 과할지의 여부만 결정하면 족한 것이다.

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Snead 는 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명한 부분은 ① 그에게 현실적 악의가 없었고, ② 제 1 심 법원은 현실적 손해를 인정한 바 없으며, ③ 그 부과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 우선 위 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다른 두 가지 쟁점의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Snead 는 제 1 심 법원은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s)를 인정하였다기 보다는 명목적 손해(nominal damages)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위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텍사스주법상 현실적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의 원고는 징벌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Brown v. Petrolite Corp., 965 F 2d 38, 48-49).

Redland 와 Standard 는 위 법리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얻은 각 1 달러씩의 손해는 명목적 손해가 아니라 현실적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상적 손해(compensatory damages)로서 주어진 1 달러의 손해는 항상 명목적 손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위 Petrolite 판결 965 F. 2d, 38). 따라서 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Snead 의 주장 중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현실적 손해배상액에 비해 너무 과다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여기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수 개인사건(private private cases)에 관한 명예훼손 소송의 추정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의 회복에 관하여 연방헌법은 어떠한 최소한의 기준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 개인사건에 관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연방헌법은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텍사스주법상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관습법상의 악의(common law malice)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 1 심 법원은 Snead 가 관습법상의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고, Snead 는 위 판시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송후의 이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제 1 심 법원이 추정손해를 부과할 것인가의 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환송후의 제 1 심 법원의 심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정손해만이 인정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텍사스주법상 추정손해만 부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다. Leyendecker 사건(683 S. W. 2d at 372-275)의 판결에서 텍사스주법원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 원고가 하등의 현실적 손해를 입증한 바 없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인용한 바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일부 인용하고, 일부는 부당하므로 파기하여 제 1 심 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